

[사 건 명] 행심 2014-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01.07. 청구인에게 한 “상대정화구역 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재설정 신청을 이행”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240-36번지 소재 지하4층부터 지상 6층 건물이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200M가 초과하여 대법원 판례(학교보건법의 학교경계선은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니라“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적시) 및 교육부 질의 답변을 원용하여 ○○유치원의 상대정화구역 재설정을 2013.12.24. 민원서류로서 요청하였다.
- 나. 2014.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회신으로 ‘○○유치원 학교부지 경계는 종교부지(성당)뿐만 아니라 유치원이 공유하는 교육시설용지(운동장, 놀이공간, 출입문 등)도 해당’ 된다고 하여 상대정화구역 재설정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에 이의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상대정화구역을 재설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4.01.24. 제기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유치원의 학교경계선은 종교부지를 포함한 경계선이 아니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출력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동 240-36번지는 ○○유치원의 상대정화구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200M 초과된 개별호수에 대하여는 상대정화구역을 재설정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청구 이유에서 제시한 “교육청 담당 주무관의 출력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이라는 자료는 2014.1.10. 청구인이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을 기점으로 한 가상의 상대정화구역’ 시뮬레이션에 의해 임의로 출력한 자료에 불과하고, 공적으로 전달한 바는 없으며, 청구인이 ‘학교경계선’이 아니라 ‘건물’을 기점으로 한 측량자료를 제시하여 주장하기에 임의로 출력하였던 것이다.
- 나. ○○유치원은 1970. *. *.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최초인가를 받았으며 재단법인 ○○○ 이사장 ○○○가 1978. *. *. 토지(399-3,5,6,7,8,9,10,11,12)와 건물(399-8,11)의 사용을 승낙하여 현재까지 원아 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원의 경계에서 ○○동 240-36번지가 200m를 초과하였다”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보건법 제5조
- 나.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2. 판 단

가.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학교환경정화구역 재설정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2)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상대정화구역을 재설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상대정화구역 재설정’이라는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범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권리' 없이 한 청구인의 신청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살펴건대,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

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학교보건법상 주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조리상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재설정 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반드시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비록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출력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물 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동 240-36번지는 ○○유치원의 상대정화구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이미 설정 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변경 또는 재설정을 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설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그 통지로써 청구인의 신청권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V. 결 론

이에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